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성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85
------------	------

발의연월일 : 2016. 9. 12.

발의자 : 김성찬 · 홍문종 · 위성곤
이주영 · 황주홍 · 유기준
정인화 · 곽대훈 · 김한표
김태흠 의원(10인)

제안이유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물’에서 ‘대기’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국제해사기구(IMO)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 단위의 환경규제도 강화되고 있음.

이에 해외 선진 해운사들은 환경친화적 선박을 구매하여 대응하고 있는 반면, 국내 해운업계는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투자 부족과 규제로 인한 비용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한편, 국내 조선업계도 선박공급 과잉으로 신규 수주가 급감하고 선박 가격이 하락하는 등 위기에 처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판로 확대를 통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함(안 제3조 및 제4조).
- 나. 국가는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함(안 제6조).
-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소유자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를 공급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건조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 등을 개발·생산·공급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선령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개조 또는 조기폐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하도록 함(안 제12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선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 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 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
2. “선박에너지효율”이란 선박이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사용한 에너지량을 이산화탄소 발생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가.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거나 선박에너џ이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나. 액화천연가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제3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장기 목표
3.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구개발 및 그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액화천연가스 공급시설 등 선박 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선박 운항의 안전과 효율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선박의 세부 기술개발사업 방향의 일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 기술개발 분야
2. 기술개발 분야별 중점 추진목표
3. 기술개발 추진 일정 및 방법
4.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액화천연가스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술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정책협의회) 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① 국가는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환경친화적 선박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8.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9. 「선박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선박 관련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제7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기반구축사업
2. 국제기술협력사업
3. 산업기술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8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9조(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생산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액화천연가스 등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를 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 건조 등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건조, 시운전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2.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 등을 개발·생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3. 환경친화적 선박의 승인·검사·시험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노후선박의 조기폐선 등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선령(船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개조 또는 조기 폐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권고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개조 또는 조기 폐선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이 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는 다음 각 호의 재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
2.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부 칙

i)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